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등〉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477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V . 입법의 재정영향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2. 1.

다. 회 부 일 : 2024. 2. 2.

II.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2항).

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중

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9조의2제1항).

IV. 검토의견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등

현행				개정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제91조의18) ○ 가입대상 : -19세 이상인 자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 있는 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가입 제한 ○ 특례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 아래 표과 같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 ○ 가입대상 : -19세 이상인 자 -15세 이상으로 근로소득 있는 자 * 단, 신설하는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가입 허용 ○ 특례내용 :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 아래 표과 같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table><tr><th colspan="2">소득액</th><th>200만원 이하</th><th>200만원~400만원</th><th>400만원 초과</th></tr><tr><th>대상</th><th></th><td></td><td></td><td></td></tr><tr><td rowspan="2">서민* 농어민</td><td>일반 ISA</td><td colspan="2">비과세</td><td>9% 분리과세</td></tr><tr><td>일반 ISA</td><td>비과세</td><td colspan="2">9% 분리과세</td></tr><tr><td>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td><td>일반 ISA</td><td colspan="3">(가입불가)</td></tr></table>				소득액		200만원 이하	200만원~400만원	400만원 초과	대상					서민* 농어민	일반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일반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일반 ISA	(가입불가)			<table><tr><th colspan="2">소득액</th><th>500만원 이하</th><th>500만원~1,000만원</th><th>1,000만원~2,000만원</th><th>2,000만원 초과</th></tr><tr><th>대상</th><th></th><td></td><td></td><td></td><td></td></tr><tr><td rowspan="2">서민* 농어민</td><td>일반 ISA</td><td colspan="2">비과세</td><td colspan="2">9% 분리과세</td></tr><tr><td>국내형 ISA**</td><td colspan="3">비과세</td><td>9% 분리과세</td></tr><tr><td rowspan="2">일반</td><td>일반 ISA</td><td>비과세</td><td colspan="3">9% 분리과세</td></tr><tr><td>국내형 ISA</td><td colspan="2">비과세</td><td colspan="2">9% 분리과세</td></tr><tr><td rowspan="2">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td><td>일반 ISA</td><td colspan="4">(가입불가)</td></tr><tr><td>국내형 ISA</td><td colspan="4">14% 분리과세</td></tr></table>						소득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2,000만원 초과	대상						서민* 농어민	일반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국내형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일반	일반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국내형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일반 ISA	(가입불가)				국내형 ISA	14% 분리과세			
소득액		200만원 이하	200만원~400만원	400만원 초과																																																																										
대상																																																																														
서민* 농어민	일반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일반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일반 ISA	(가입불가)																																																																												
소득액		500만원 이하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2,000만원	2,000만원 초과																																																																									
대상																																																																														
서민* 농어민	일반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국내형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일반	일반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국내형 ISA	비과세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일반 ISA	(가입불가)																																																																												
	국내형 ISA	14% 분리과세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국내투자형 ISA 없음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이월허용), 총 한도 1억원 ○ 의무가입기간 : 3년 ○ 계좌의 운용재산 - 예금·적금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 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국내투자형 ISA 신설 ○ 납입한도 : 연 4천만원(이월허용), 총 한도 2억원 ○ 의무가입기간 : (현행과 같음) ○ 계좌의 운용재산 - 일반투자형 ISA · 예금·적금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현 행	개 정 안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상장법인 주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등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 상장법인 주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등 - <u>국내투자형 ISA</u> · <u>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u> · <u>상장법인주식</u> ·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등</u>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29조의2)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아래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u>,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등	□ <u>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국내투자형 ISA 가입 허용</u> ○ <u>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국내투자형 ISA 가입 허용</u>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외)</u>,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등

* 박대출의원안 2024. 2. 1. 제출(의안번호 26477)

□ 개정안은 정부의 2024년 업무보고인 「2024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¹⁾을 구체화된 것으로,

①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하고, ②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국내투자형 ISA에는 현행법상 국내투자형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며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1)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1.17.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일반투자형 ISA	국내투자형 ISA(신설)
납입 한도	연간 한도		2천만원 (이월허용)	4천만원 (이월허용)	
	총 누적 한도		1억원	2억원	
세제 혜택 (이자· 배당 소득)	일반 투자자	비과세 한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시	9% 분리과세		
	서민 농어민	비과세 한도	4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시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ISA 가입	가입제한		가입허용
		비과세 한도	-		- (비과세 없음)
		비과세 한도 초과시			14% 분리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출시되었으며,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등 3가지로 구분²⁾되는데, 중개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형ISA와 신탁형ISA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차이는 있으나 세 가지 유형 모두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식임.

[ISA의 종류]

구 분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투자가능재산	국내상장주식 등	예금, ETF, 펀드, 등	ETF, 펀드 등
투자선택여부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증권사가 포트폴리오운용
투자방법	간접투자		

□ 제도 도입 시기인 2016년부터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14%의 세율³⁾이 적용되었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과세특례 혜택을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당시 비과세 한도는 서민·농어민이 250만원, 그 밖의 가입자는 200만원이었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음.

이후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서민·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19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고,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제도가 영구화되었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

[ISA 제도 및 과세특례 연혁]

구 분	2015년 개정	2017년 개정	2020년 개정
가입대상	19세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		19세이상인 자
비과세한도	서민·농어민 250만원 기타 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 기타 200만원	
일몰기한	~2018년	~2021년	제도 영구화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54억원 수준이며, 2023년에는 65억원, 2024년에는 68억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됨.

[ISA 조세지출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
금액	1	8	24	138	54	65	68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부분과, ②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국내투자형 ISA 가입을 허용하려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①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ISA의 출시 목적인 국민 자산형성 지원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은 ISA를 통한 투자유인을 증가시켜 동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보다 기여할 것이 기대됨. 특히, 2021년 대비 2022년 조세지출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등 ISA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IS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가입이 증가할 수 있음.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음.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의 상향조정을 통해 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될 것이고 이는 국내 증시의 부양 및 기업 자금조달 환경의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신설하는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현행에 비해서는 5배, 일반 ISA에 비해 2배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인이 특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셋째, 한국의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영국 ISA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2만 파운드 수준(원화 약 3,278만원)이고 비과세 한도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360만 엔(원화 3,249만원) 수준이고 비과세 한도가 따로 설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것에 비해, 한국의 ISA는 현재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만원~400만원인 실정임.⁴⁾

4)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영국 및 일본의 ISA 제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영 국	일 본 ⁵⁾
납입 한도	(現) 연 2천만원 → (改) 연 4천만원	연 2만 파운드 (원화 약 3,278만원)	연 360만엔* (원화 3,249만원) * 성장형, 적립형 중복가입 가정
비과세 한도	<일반투자형 ISA> (現) 200(서민형 400)만원→ (改) 500(서민형 1,000)만원 <국내투자형 ISA> (改) 1,000(서민형 2,000) 만원	없 음	없 음
편입 자산	예·적금, 채권, 주식, 펀드, 파생증권 등	(예금형) 예·적금, MMF 등 (주식형) 주식, 펀드, 사채·국채	주식,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상장리츠 등 (예·적금 X)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개정안의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까지의 인원·비중을 감안할 때, 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11월 기준으로 ISA에 가입한 1계좌 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474만원 수준이고, 누적 투자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수는 3,977계좌로 전체의 0.1%에 불과⁶⁾하여, 현재 ISA의 납입한도까

5)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24년부터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NISA)의 납입한도 등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음.
일본의 ISA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 (新NISA, '24.1월 시행)
- 年 납입한도 : 일반형(現성장형) 120만엔 → 240만엔 / 적립형 40만엔 → 120만엔
- 총 납입한도 : 일반형(現성장형) 600만엔 → 1,200만엔 / 적립형 800만엔 → 1,800만엔
- 중복가입여부 : 일반형·적립형 중복가입 불가 → 성장형·적립형 중복가입 가능
* 적립형은 적립식 펀드만 편입 가능, 일반형(現성장형)은 주식, ETF, 리츠 주식형펀드 등 편입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6) 누적 투자금액 2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누적 투자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계좌의 비중은 35만 1,519계좌 중 3,977계좌로 약 1.3%에 불과함.

지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려는 개정안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ISA에 대한 비과세 한도 등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향후 가입인원과 투자금액도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임.

[ISA 가입자 및 투자현황]

(2023. 11월 말 기준)

구 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합 계
가입계좌(만좌, A)	87.3	17.9	383.4	488.5
전체 투자금액(억원, B)	127,382	13,085	91,176	231,643
1계좌당 투자금액(만원, B/A)	1,459	731	238	474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금액 수준별 인원]

(2023. 11월 말 기준)

구 분	계좌수(만좌)	비중
1만원 이하	315	64.6%
1만원 ~ 10만원	23	4.7%
10만원 ~ 3백만원	37	7.7%
3백만원 ~ 5백만원	12	2.4%
5백만원 ~ 1천만원	21	4.3%
1천만원 ~ 2천만원	51	10.4%
2천만원 ~ 4천만원	21	4.2%
4천만원 ~ 6천만원	8	1.6%
6천만원 ~ 8천만원	1 (7,542 계좌)	0.2%
8천만원 초과	0 (3,977 계좌)	0.1%
합계	489	100%

자료: 금융투자협회

둘째, 개정안의 취지와 다르게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투자가 확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형 ISA를 통해 해외 증시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한바,

국내 증시의 수익률 등이 해외 주식에 비해 투자자산으로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지 않는다면 ISA를 통한 투자의 확대가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확충 및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는 등 정책효과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셋째,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의 혜택이 저축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계좌의 수 및 비중이 크지 않고 1계좌 당 평균투자금액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의 입법화로 국내 증시로의 자금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는 현재의 납입한도 이상을 투자할 여력이 있거나 비과세 한도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소득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다음으로, ②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동 정책금융상품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

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임.

첫째, 고액 자산가의 국내 증시에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내 증시로의 자금유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고액자산가들이 ISA에 가입하는 경우 최대 2억원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⁷⁾받을 수 있게 되는데, 국내투자형 ISA 가입을 늘릴 유인이 있고, 이는 국내 증시로의 자금유입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까지 제고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 국내 증시시장에의 장기적·안정적인 자금공급에 기여할 수 있음. 3년 이상 유지해야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ISA 계좌의 조건을 감안할 때 ISA에 유입된 자금은 최소 3년의 기간동안 국내 자본시장에의 투입자금으로서 기능할 것인바, 증시시장의 장기적·안정적인 자금공급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ISA 가입 허용은 동 정책금융상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ISA 제도의 목적은 비과세 혜택을 통해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서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고액자산가의 ISA

7)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 고액 자산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데, 개정안의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최대 2억원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또한, 과세표준 중 ISA를 통해 14%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다 낮은 한계세율 구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조세 감면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가입 허용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둘째, 고액자산가의 분리과세 허용은 실질적으로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율인하라는 점에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 고액자산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한계세율을 적용⁸⁾받게 되는데, 개정안의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하여 투자하는 경우 최대 2억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

또한, 과세표준 중 ISA계좌를 통해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다 낮은 한계세율 구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조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이는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8)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5,000만원	15%
5,000만원~ 8,800만원	24%
8,800만원~ 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45%

□ 참고로 개정안은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등”을 국내투자형 ISA 계좌의 투자재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투자형 ISA”라는 정책금융상품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투자재산의 종류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상장법인 주식 투자비율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40%보다 상향하되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의 세수효과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9년 이후 연간 약 2~3천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28억원, 2025년~2029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536억원, 총 2,681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⁹⁾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확대 (안 제91조의18)	△28	△28	△875	△875	△875	△2,681	△536

문 의 처

02)6788-5155

9)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참고.